

16. 首都圈 整備施策 改善方案에 대한 討論會(Ⅰ)

主催：國土開發研究院

지난 5월 14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수도권정비시책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을 I·II 차례로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I.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개선방안

陳 英 煥(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목 차

I. 검토배경

1. 수도권정책의 개요
2. 수도권문제의 심화
3. 수도권정책의 전환 및 관련시책

II. 수도권 공업정비시책 개선방안

1. 수도권 공업입지 동향과 문제점
2. 수도권 공업입지시책 현황과 문제점
3. 수도권 공업입지시책 정비방안
4. 수도권공장 지방이전 촉진방안

III. 수도권 권역조정방안 검토

1. 수도권 권역현황 및 문제점
2. 수도권 권역조정의 필요성
3. 수도권 권역조정 대안검토

I. 검토배경

1. 수도권정책의 개요

1) 수도권정책의 기본목표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2)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상」계획과제(제2장, 제2절)

① 지역간 분산(전국적 차원, Decentralization)

-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체계를 다핵구조로 개편
- 수도권 유입인구 억제와 성장거점도시 중심의 인구지방정착 유도

② 지역내 분산(지역적 차원, Deconcentration)*

- 수도권내부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과밀, 과소지역의 정비*
- 서울의 과대한 기능 집적과 주택, 교통 등 도시서비스 비용의 증대해소
-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산업입지에 대한 정비수단의 강화

3) 수도권정책의 주요수단

① 수도권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등규제

- 각권역별로 특징있는 정비전략과 광역적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 도모
 - 이전촉진권역 : 집중규제
 - 제한정비권역 : 과밀억제
 - 개발유도권역 : 이전수용
 - 자연보전권역 : 환경보전
 - 개발유보권역 : 특수개발

② 주요규제수단

- 공장의 신증설 규제
- 고등교육시설 신증설, 증원 억제 및 지방분교 설치
- 공공기관의 신설 규제 및 지방이전

○ 대형건축물 규제

2. 수도권문제의 심화

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심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전국비중〉

(단위 : %)

구 분		1960	1970	1980	1990
인 구	수 도 권	20.8	28.3	35.5	42.7
	서 울	9.8	17.6	22.3	24.4
제 조 업 고 용	수 도 권	33.5	46.0	45.9	47.8
	서 울	23.3	33.9	22.1	15.6

② 수도권내 중심지역과 외곽지역 간 격차발생

〈수도권 권역별 평균 인구증가율〉

(단위 : %)

기 간	전 국	수 도 권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
80~85	1.5	3.5	2.9	6.6	0.0*	0.1*	-0.2*
85~90	1.5	3.2	2.2	6.6	1.4*	1.0*	0.1*

3. 수도권정책의 전환 및 관련시책

기존정책방향	새로운 정책방향
□ 수도권 역제에 의한 국토균형개발	⇒ □ 지방육성에 의한 수도권 압력완화
□ 5개권역별 차동규제	⇒ □ 수도권내 분산유도
□ 직접(물리적)규제	⇒ □ 간접(경제적)규제

- | | |
|---------------|---|
| ① 지방육성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지대, 지방대도시 중점육성 - 중소도시 주력산업 육성 -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
| ② 수도권 균형발전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공업시책정비, 권역조정 |
| ③ 경제적 규제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부담금 |

II. 수도권(공업정비)시책 개선방안

1. 수도권 공업입지 동향과 문제점

1) 수도권지역 지속적인 공업집중

- 지난 30년간 수도권 공업비중(고용기준)지속적 증가
 - 1960 : 33.5% → 1970 : 46.0% → 1980 : 45.9% → 1990 : 47.8%
- 1970년대에는 동남해안공업지대 중점투자로 수도권 집중현상 일시완화
- 1980년대 들어서 수도권지역 공업집중 다시 심화
 - 1980-1990년간 전국 제조업체수 증가량의 69.6%인 26천개 증가
 - 1980-1990년간 전국 제조업고용 증가량의 51.6%인 519천인 증가
- 수도권 공업집중 주요요인
 - 입지적 요인
 - 수도권지역의 양호한 입지여건 : 높은 외부경제효과, 양호한 기반시설
 - 산업구조적 요인
 - 대도시 지향적 산업구조 변화 : 소재・장치형산업 → 조립가공・첨단산업
 - 비공간정책적 요인
 - 민간위주 경제운용(정부간섭 축소), 국제경쟁력 강화정책 등

〈수도권 제조업 추이〉

구 분	사업체수(개)		종업원수(천인)		생산액(10억 원)	
	1980	1990	1980	1990	1980	1990
전 국	30,823 (100.0)	68,872 (100.0)	2,015 (100.0)	3,020 (100.0)	36,279 (100.0)	177,309 (100.0)
수 도 권	13,512 (43.8)	40,005 (58.1)	924 (45.9)	1,443 (47.8)	14,008 (38.6)	77,654 (43.8)
서 울	7,652 (24.8)	17,520 (25.4)	445 (22.1)	471 (15.6)	5,865 (16.2)	18,606 (10.5)
인 천 · 경 기	5,860 (19.0)	22,485 (32.7)	479 (23.8)	972 (32.2)	8,143 (22.4)	59,048 (33.3)

2) 수도권공업의 확산과 지역내 격차발생

① 수도권 공업분포의 광역화

- 1960년대 :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절대집중
- 1970년대 : 수도권 집중추세 정지, 수도권내 분산(서울→주변도시)
- 1980년대 : 수도권 재집중, 수도권내 분산(중심지역→30~40km권)

〈수도권 공업분포 변화 : 고용기준〉

기 간	구 分	수 도 권	서 울	인 천 · 경 기
1960년대	지 역 간 집 중	++	++	+
	지 역 내 집 중	(33.6→46.0)	(23.3→33.9)	(10.3→12.1)
1970년대	지 역 간 안정	°	--	++
	지 역 내 분 산	(46.0→45.9)	(33.9→22.1)	(12.1→23.8)
1980년대	지 역 간 집 중	+	--	++
	지 역 내 분 산	(45.9→47.8)	(22.1→15.6)	(23.8→32.2)

1) ++대폭성장, +성장, °안정, -감소, --대폭감소

2) ()은 10년간 전국비중의 변화치임, 단위 : %

② 수도권내 공업집적의 권역간 격차발생

○ 80년대 수도권공업 광역화의 주요패턴

- 수도권 고용증가의 59.4%가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발생

- 이전촉진권역 → 제한정비권역으로 광역적 확산
- 5개권역별 공업집적도(제조업 고용밀도)
 - 이전촉진 301.6, 제한정비권역 403.2人/km²
 - 개발유도 115.9, 자연보전 24.9, 개발유보권역 18.1人/km²

〈권역별 인구 및 제조업 고용밀도 : 1990〉

구 분	인 구 밀 도	제 조 업 고 용 밀 도
수 도 권	1,590인/km ²	125.3인/km ²
이 전 촉 진 권 역	6,686	301.6
제 한 정 비 권 역	3,272	403.2
개 발 유 도 권 역	416	115.9
자 연 보 전 권 역	152	24.9
개 발 유 보 권 역	188	18.1

3) 수도권내 제조업체 규모의 영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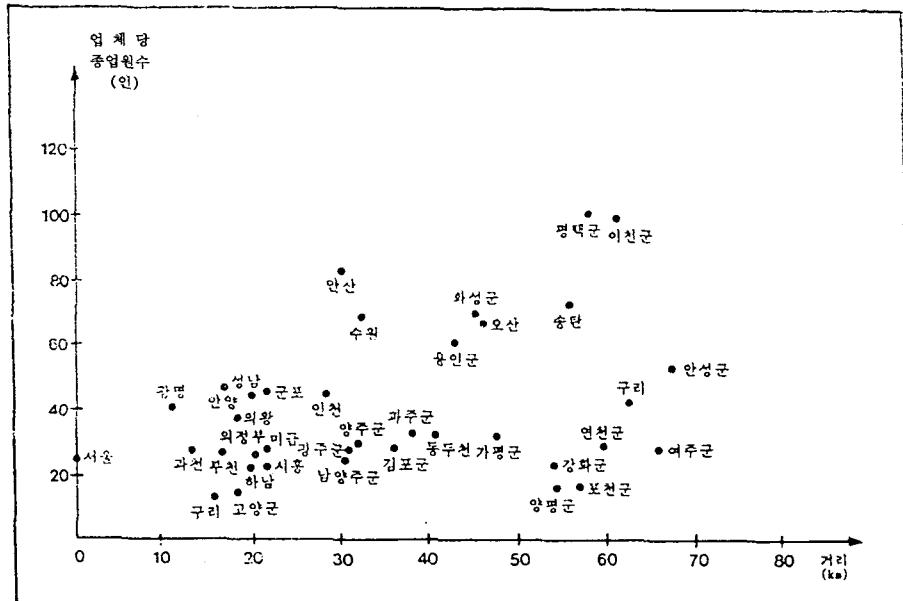
- 수도권 소재업체중 87.8%가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전국 85.4%)
- 1980~1990년간 수도권내 증가공장의 94.0%가 영세기업(전국 90.7%)
 - 서울의 경우 대기업은 80개, 중소기업은 43개 감소
 - 영세기업 9,991개 증가 → 영세기업 「인큐베이터」역할

〈수도권 업체규모별 사업체수 증가분 : 1980~1990〉

구 분	합 계	영세기업 (5~49인)	중소기업 (50~299인)	대 기 업 (300인 이상)
전 국	38,048 (100.)	34,496 (90.7)	3,403 (8.9)	149 (0.4)
수 도 권	26,493 (100.0)	24,900 (94.0)	1,588 (6.0)	5 (0.0)
서 울	9,868 (100.0)	9,991 (101.2)	-43 (-0.1)	-80 (-0.3)

-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제조업체 평균규모 증가
 - 경부축 : 서울(26.9인)→평택(40.8인)→안양(49.1인)→수원(72.0인)→송탄(75.1인)
→평택군(117.7인)
- 중심지역은 영세기업, 외곽지역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특화

〈시군별 제조업체 평균 종업원수〉



2. 수도권 공업입지시책 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 공업입지시책 현황

○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의 법적 근거

-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
- 이전촉진, 제한정비권역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보전관련법」개별적용

○ 권역별, 업종별, 규모별, 입지유형별로 다양하게 규제

- 권역 :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 업종 : 생활지원형, 도시형, 첨단업종 등
- 입지유형 : 신설, 증설, 이전
- 규모 : 사례별로 차등규제($1,000\text{m}^2$, $3,000\text{m}^2$, 무제한)

〈수도권 5개 권역별 공장입지 규제실태〉

구 분	공 단 조 성	자 유 입 지
이전 촉진 권역	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191개)증설 • 아파트형공장 신·증설
제한정비권역	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지역내 공장 신·증설 • 아파트형공장 신·증설
개발유도권역	15개 계획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26개)업종과 도시형공장 이전 (1,000m²) • 기존 자연성과 도시형공장 증설 (3,000m²이내)
자연보전권역	인구증가가 낮은 시·군당 6개소 소규모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과 첨단업종(25개)신설 (1,000m²이내) • 기존 자연성과 도시형공장 증설 (3,000m²이내)
개발유보권역	시·군당 6개소 소 규 모 공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과 도시형공장 신설 (1,000m²이내) • 기존 자연성과 도시형공장 신설 (3,000m²이내)

2) 입지규제 시책상의 문제점

① 규제내용의 복잡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비효과적

- 수도권내 공업입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동원

- 권역별(5개), 업종별(생활지원형, 도시형, 첨단, 기타), 규모별, 신증설여부, 공단입지 여부 등에 따라 차등규제

-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 민원이 빈발하고 본래의 정책목표 퇴색

② 업종중심 규제로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곤란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22개업종)를 기준으로 191개 도시형업종 등 허용업종 구체적으로 구분

- 자동화, 첨단화 등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 대처어려움
 - 업종간 이해상충으로 추가허용은 가능하나 기존업종 제외시 민원발생
- ③ 제조업의 입지행태를 감안한 규제미흡
 - 영세중소기업 「인큐베이터」역할을 감안하지 못한 입지규제로 융통성 결여
 - 영세중소기업은 대도시지역을 떠나서 생산활동 거의 불가능
 - 대도시지역내에 입지한 대기업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촉진수단 결여
 - 수도권 공장이전적지 이용규제로 기존공장 이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기업의 지방입지 동기를 자극할 만한 적극적인 지원시책 미흡
- ④ 일부 비합리적인 권역별 입지규제
 - 제한정비권역내 규모제한 없이 비도시형공장 신증설 허용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서울 대도시지역 환경, 교통문제 야기
 - 개발유도, 자연보전권역내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 개발유보권역에서 도시형공장 신설가능
 - 반면에 공업유치를 위한 개발유도권역에는 도시형공장 신설규제

3. 수도권 공업입지시책 정비방안

1) 기본방향

- ① 수도권 공업입지의 지속적 역제와 지역간 분산유도
 - 수도권 공업생산 비중 점진적 축소 :
 - 3차 국토계획상 전국비중 44%('90)→35%수준(2001)
 - 대규모 기업의 신규입지 규제강화 및 지방이전 유도
 - 대기업의 지방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
- ② 수도권공업의 적정배치로 지역내 균형발전 도모
 - 중심지역에서 집중된 공업기능의 외곽지역 분산유도
 - 경인, 경수축, 서울근교지역에 집적된 제조업의 광역적 분산배치
 - 외곽지역의 계획공단 조기개발로 이전공장 수용
 - 중심지역은 영세기업 위주로 특화유도

- 대도시의 영세기업「인큐베이터」역 할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

③ 수도권 공업입지수단의 합리적 정비

i) 권역구분의 단순화(5개 권역→2개 권역)*

○ 이전촉진, 제한정비, → 제 I 권역 (중심권역)

○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 제 II 권역(외곽권역)

ii) 업종구분의 단순화

○ 생활지원형, 도시형, 첨단업종의 통합조정

iii) 입지유형 구분의 단순화

○ 신설, 증설, 이전 → 신설(이전포함),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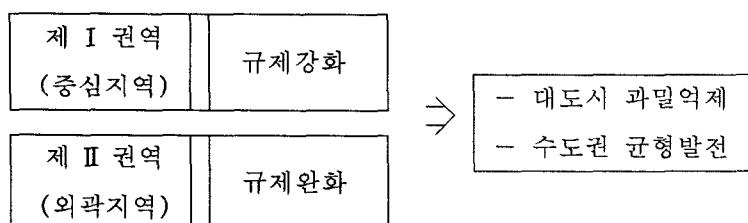
iv) 규모구분의 체계화

○ 영세중소기업(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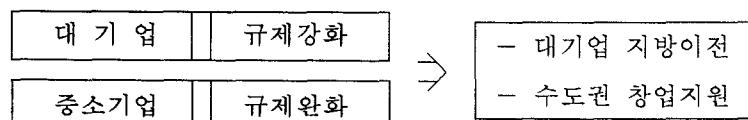
○ 업체규모에 따라 입지허용범위 체계적 차등화

2) 권역별 공업입지 규제시책 정비방향

① 권역별 정비방향



② 기업 규모별 정비방향



③ 권역별/기업규모별 정비방향

구 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현 행	조 정	현 행	조 정
제 I 권 역	이전촉진 : 금지 제한정비 : 허용	신증설 금지	이전촉진 : 금지 제한정비 : 허용	영세업체 허용
제 II 권 역	신증설 규제	신설 금지	신증설 규제	규제완화

3) 공업입지 규제시책 정비방안

① 제 I 권역(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 제 I 권역내 대기업체공장 신증설 금지
 - 제한정비권역에서도 대기업체 신증설 금지로 지방이전 촉진
- 제 I 권역내 공업지역 신규지정 금지
- 공업지역내 영세중소업체 신증설 허용
 - 이전촉진권역에서도 제한정비권역과 같이 영세중소업체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여 비공업지역내 무등록공장 이전정비
 - 아파트형공장의 대량공급으로 영세중소업체 수용
- 비공업지역내 아파트형공장에 영세규모 도시형공장 신증설 허용

② 제 II 권역(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 제 II 권역내 대기업체공장 신설금지(국가공단 제외)
- 공업단지내 중소업체의 신증설 허용
 - 자연보전권역내 공단에서도 비도시형공장 입지허용
 - 공단 입주업체 선정시 중소업체 이전공장에 우선권 부여
- 도시형공장 개별입지 완화
 -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도시형공장 개별입지 허용
- 수출액 비중이 높은 기존공장 증설허용
- 사무실, 창고 500m²까지 공장면적에서 제외

※ 대기업의 범위로는

- 좁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1993년 4월 기준 604개)
- 넓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종업원 300인이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을 검토할 수 있음

4) 공업입지 규제시책 개선방안 : 현행시책과의 비교

① 권역별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조정대안

<현 행>

구 분	신설	증설	이전
이전촉진권역	×	○	○
제한정비권역	○	○	○
개발유도	공 단	○	○ ○
	비 공단	×	○ ○
자연보전	공 단	○	○ ○
	비 공단	×	○ ×
개발유보	공 단	○	○ ○
	비 공단	○	○ ○

<조 정>

구 분	신설	증설
제 I 권역	△ ※ 공업입지내 영세 중소업체에 한함	△
제 II 권역	○	○

② 권역별 비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조정대안

<현 행>

구 분	신설	증설	이전
이전촉진권역	×	×	×
제한정비권역	○	○	○
개발유도	공 단	○	○ ○
	비 공단	×	× ×
자연보전	공 단	×	× ×
	비 공단	×	× ×
개발유보	공 단	○	○ ○
	비 공단	×	× × ×

<조 정>

구 분	신설	증설
제 I 권역	△ ※ 공업입지내 영세 중소업체에 한함	△
제 II 권역	공 단	○ ○
	비 공단	× ×

③ 권역별 공장허용규모 조정대안(단위 : m²)

<현 행>

구 분	신설	증설	이전
이전촉진권역	없	음	
제한정비권역	없	음	
개발유도	공 단	없	음
	비 공 단	1,000	3,000 1,000
자연보전	공 단	3,000	3,000 3,000
	비 공 단	1,000	3,000 1,000
개발유보	공 단	3,000	3,000 3,000
	비 공 단	1,000	3,000 1,000

<조 정>

구 分	신설	증설
제 I 권역	※ 영세 중소업체에 한함	
제 II 권역	공 단	없 음
	비 공 단	1,000 3,000

5) 예상효과

① 제 I 권역

- 대기업체 공장 신증설 금지로 대기업 지방입지 활성화
- 제한정비권역내 공장 신증설 감소로 과밀억제 및 대도시문제 완화
-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입지공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시내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4,077개중 대부분이 영세규모업체
 - 200m²미만 1,827개(49.0%), 500m²미만 3,579개 (87.8%)

② 제 II 권역

- 개발유도, 자연보전권역내 도시형공장 개별입지 허용으로 수도권 외곽지역 개발 활성화
- 공업단지내 비도시형공장 입지유도로 환경문제 개선
- 사무실, 창고면적을 공장면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생산공간확보용이
- 대기업체 공장신설 금지로 대기업 지방입지 활성화

4. 수도권공장 지방이전 촉진방안

1) 수도권내 공장이전적지 처분지원

-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적지 처분상 불이익 배제
 - 이전적지를 시가로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 필요시 용도지역 변경(공장→준공업, 준공업→준주거)
- 이전적지의 재개발로 도시토지이용 고도화 도모
 -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아파트형공장 건설
 - 대규모 이전적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 추진

2) 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지원강화(관계부처 협의 필요)

- 낙후지역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공단 지원강화 : 농공단지 수준
 - 소득세, 법인세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투자준비금 손금산입(15%이내), 특별감가상각 100%추가
 - 시설자금(90%), 운전자금(70%), 부지매입비 금융지원
- 지방근로자 노동소득세 공제, 지방근무 관련수당 비과세

3) 민간기업 지방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부여

- 각종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 소요인력 직접공급을 위하여 대학설립권 우선부여
- 국토이용관련법상 행위규제, 기업의 여신관리규제 완화
- 공단, 배후도시, 대학 등을 포함한 복합전용단지 개발권 부여

〈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선호도 조사〉

인센티브	우선순위
① 기업용지 확보를 위한 여신관리규제 완화	73.1%
② 공단개발사업 민간기업 시행	50.0%
③ 녹지 등 토지개발규제 완화	50.0%
④ 도로, 항만, 용수 등 기반시설 정부지원	46.1%
⑤ 개발부담금 감면	42.3%
⑥ 연구소, 배후주거단지 개발권부여	38.5%

※ 삼성, 현대, 대우, 럭키 등 30대 그룹사 대상 설문조사

III. 수도권 권역조정방안 검토

1. 수도권 권역현황 및 문제점

1) 권역구분 경위

'77. 12 :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수도권범위 설정
— 면적 : 2,999km²

'78. 12 : 「공업배치법」에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상의 수도권을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으로 구분

— 이전촉진지역 : 1,430km², 제한정비지역 : 1,569km²

'81. 12 : 이전촉진, 제한정비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제외

'82. 12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으로 설정

'84. 7 :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 수도권을 시·읍·면 등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하여 5개권역으로 구분

'85. 7 :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상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과 조정

2) 권역현황(1990)

권역	면적(km ²)	인구(천인)	정비전략
수도권	11,680	18,600	—
이전촉진권역	1,717	11,644	집중규제
제한정비권역	1,561	5,078	과밀억제
개발유도권역	1,113	614	이전수용
자연보전권역	4,034	632	한강보전
개발유보권역	3,255	632	특수개발

3) 인구 및 산업분포

① 인구분포

- 수도권의 전국인구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 1960 : 20.8% → 1970 : 28.3% → 1980 : 35.5% → 1990 : 42.7%
- 수도권내에서 제한정비권역의 인구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여타권역의 비중은 감소
 - 이전촉진권역 67.1%(1980) → 62.6%(1990)
 - 제한정비권역 21.1%(1980) → 27.3%(1990)
 - 외곽 3 개권역 11. 8%(1980) → 10.1%(1990)

② 산업분포

- 수도권 제조업 전국비중 지속적으로 증가(고용기준)
 - 1960 : 33.5% → 1970 : 46.0% → 1980 : 45.9% → 1990 : 47.8%
-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의 비중감소 제한정비권역 비중증가
 - 이전촉진권역 48.8%(1993) → 35.5%(1990)
 - 제한정비권역 39.7%(1993) → 45.6%(1990)

③ 수도권 중심지역과 외곽지역간 격차발생

- 인구밀도 : 이전촉진권역 6,686인/km², 자연보전권역 152인/km²
- 제조업밀도 : 제한정비권역 403인/km², 개발유보권역 18인/km²

〈수도권 권역별 개발현황 : 1990〉

권역	면적 (%)	인구 (%)	인구밀도 (인/km ²)	제조업고용 (%)	제조업밀도 (인/km ²)
수도권	100.0	100.0	1,590	100.0	125.3
이전촉진	14.7	62.6	6,686	35.5	301.6
제한정비	13.4	27.3	3,272	45.6	403.2
개발유도	9.5	3.3	416	8.0	115.9
자연보전	34.5	3.4	152	6.9	24.9
개발유보	27.9	3.4	188	4.0	18.1

2. 수도권 권역조정의 필요성

1) 여건변화에 따라 권역구분 및 규제내용 조정필요

① 이전촉진, 제한정비권역

- 제한정비권역이 수도권 5개권역중 규제정도 가장 미약
 - 제한정비권역내에서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 가능
 - 이전촉진권역이나 제한정비권역에서 100만m²이상 주택조성 가능
- 인구 및 산업분포의 광성화로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 동질화

② 개발유도권역

- 원래의 목적대로 수도권 기능의 분산수용 역할 미흡
 - 아산 국가공단 분양부진, 발안, 안중공단 등 개발부진
 - 계획공단 위주의 개발전략상 개별입지 규제

③ 자연보전권역

- 환경처의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규제 : 권역의 52%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공업단지, 주택개발사업 규제로 수도권내 낙후지역화

④ 개발유보권역

-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로 개발여건 변화
- 공업단지, 주택개발사업 규제로 수도권내 낙후지역화

2) 일부 권역지정의 불합리로 민원발생

① 이질적인 지역 동일권역내에 포함

-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 이전촉진권역에 포함
- 한강수계가 아닌 지역이 한강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 인구와 산업집중의 우려가 없는 낙후도산지역이 유보권역으로 지정

② 권역구분이 행정구역 및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발생

3. 수도권 권역조정 대안검토

〈권역조정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조 정 방 안	검 토 내 용
대 안 I <규제내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권역 그대로 존속 권역별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 민원해소 가능 수도권 중심지역 과밀해소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근본적문제 해결미흡
대 안 II <2개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I 권역(서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촉진, 제한정비권역 제 II 권역(서울권이외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정책방향 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지역 규제강화, 외곽지역 규제완화) 권역구분의 단순화로 정책효과 제고 수도권 문제의 확산 우려
대 안 III <다핵다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을 중핵으로 주변에 기능별 권역설정 각권역별 중심도시 중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 개념적 용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선별적 개발가능 구체적 집행을 위한 시책개발 어려움 권역획정에 따른 민원예상

- 수도권내 균형발전, 수도권정책의 집행력 제고, 수도권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제Ⅱ안(제2개권역)선정
- 권역조정시 권역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와 관련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조정 검토